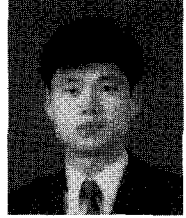


# 「용자업무」



김형선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업무부 대리

## 1. 용자개요

조합원에게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어음할인(시공자금 포함)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 2. 용자의 종류 및 거래방법

종 류	내 용
운영자금	주요 기계설비공사 자재의 비축, 기계설비공 사용 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보수 및 노임지불 등 기계설비공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신용운영 자금)	은행도입람출급약속어음 또는 공정증서부약 속어음의 담보에 의한 용자
(담보운영 자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부동산, 등 담보물제 공에 의한 용자
(입보면제 운영자금)	연대보증인 없이 자기출자지분액을 담보로 신 용운영자금한도 범위내의 용자
시공자금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어음할인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 3. 용자채무약정

### 가. 약정의 의의

조합원이 조합에 보증이나 용자를 신청함에 앞서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계약을 말한다.

### 나. 약정의 종류

#### (1)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조합원이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금액을 한도로 조합으로부터 계속하여 용자를 받고자 하는 때에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 (2)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한도거래용채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동 약정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로서 매 거래시마다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체결하는 약정이다.

**다. 약정시 구비서류**

(1) 입보거래

구분	법 인	개 인
약 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서(조합소정서식)</li> <li>• 법인등기부등본</li> <li>• 이사회차입결의 및 감사승인서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li> <li>• 법인 인감증명서</li> <li>•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서(조합소정서식)</li> <li>• 개인 인감증명서</li> </ul>
연대 보증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인감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인감증명서</li> </ul>

(2) 신용거래

구분	법 인	개 인
약 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서(조합소정서식)</li> <li>• 법인등기부등본</li> <li>• 이사회차입결의 및 감사승인서 (조합소정서식)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li> <li>• 법인 인감증명서</li> <li>•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서(당조합 소정서식)</li> <li>• 개인인감증명서</li> </ul>
대표자의 배우자등 개인연대 보증인 입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인감증명서</li> <li>2. 호적등본(가족관계 확인용) ※ 조합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출 생략</li> <li>3. 재산세 납부증명원(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연간 종합토지세 및 건축물 재산세 합산액이 5만원이 상이어야 함)</li> </ul>	좌 동

(3) 약정체결시 구비서류중 유의사항

가)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이어야 한다.

나) 약정체결 후 다음의 사유 발생시 약정을 갱신하여야 업무거래를 할 수 있다.

- ① 약정인의 출자금액 증·감
- ② 용자한도액의 감소
- ③ 연대보증인 입보자격의 상실

다) 약정체결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용자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채무추인서(조합소정서식)
- ② 법인인감증명서(신대표자)
- ③ 개인인감증명서(신대표자)
- ④ 등기부등본

라) 보증거래약정과 용자거래약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마) 조합과의 보증업무거래에 사용할 인감(1개 이내의 사용인감)은 신고하여야 하며, 약정서에는 반드시 원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바) 공동도급공사 용자에 있어서 공동수급인과 약정연대보증인이 동일인 때에는 공동수급인이 아닌 다른 조합원이 연대보증한 개별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약정연대보증인 자격 및 조건**

(1) 입보거래

가)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자격 또는 최다주식보유자(최다주식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자격을 동시에 입보)와 조합원 1인 이상이 연대보증 하여야 한다.

나) 연대보증조합원이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자기출자 지분액의 6배까지이다.

(2) 신용거래

가)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자격 또는 최



다주식보유자(최다주식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자격을 동시에 입보)가 연대보증 하여야 한다.

나) 약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입보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최다주식보유자중 1인 이상, 약정인의 최다주식보유자가 개인자격으로 입보한 경우에는 최다주식보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약정인의 대표자중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입보하여 거래할 수 있다.

(3) 입보자격 제한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보자격이 없다.

- 가) 출자증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되었을 때
- 나) 은행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라) 입보면제 또는 신용거래 조합원일 때
- 마) 건설업양도신고와 관련하여 조합이 의견서를 발급한 때
- 바) 어음할인후 어음발행인이 지불정지 또는 부도처분을 받거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

- 사)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제한사유에 해당된 때(“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업무”편 참조)
- 아) 조합원 연대보증인과 약정인 사이에 그 대표자나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임원이 중복된 때
- 자) 각종 보증금 청구, 용자금 연체 등 부실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4. 용자신청서류

가. 시공자금

- 1) 차용금신청서(조합소정서식)
- 2)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원본 제시)
- 3) 미확정채권양도승인서(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 4) 납세증명서(유예 포함)
- 5) 영수증(계좌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증으로 같음)

나. 운영자금

- 1) 차용금신청서(조합소정서식)
- 2) 담보(입보면제 용자시 제외)
  - ① 은행도입람출급약속어음(액면금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백지어음 포함)
  - ② 공정증서부약속어음 (인감증명서 1부 첨부)
- 3) 담보제공증서(조합소정서식)
- 4) 확정채권양도승인서(공사대확정채권시 : 조합소정서식)
- 5)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원본제시, 공사대확정채권시)
- 6) 납세증명서(유예 포함)
- 7) 영수증(계좌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증으로 같음)

다. 어음할인

- 1) 어음할인신청서(조합소정서식)
- 2)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원본제시)
- 3) 당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할인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어음)

- 4) 발주자(수급인)의 어음발행(배서)확인서 또는 어음발행(배서)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
- 5) 영수증(계좌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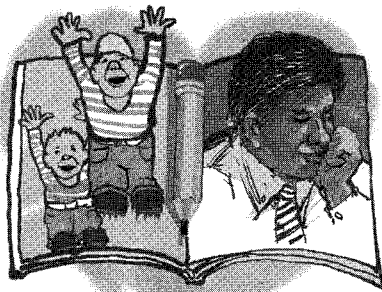
**라. 담 보**

**(1) 근담보제도**

융자 및 선금급보증신청시 매 건별로 담보약속어음을 징구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도거래약정 체결단위로 한번만 약속어음 1매를 제공하여 계속적으로 보증 및 융자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담보 및 종류**

자금별	담보종류
시공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주가 도급받은 계약공사의 미확정 채권</li> </ul>
운영자금	<b>신 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도입람출금약속어음 또는 공정증서부약속어음</li> </ul>
	<b>담 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상장주식, 정기에·적금증서</li> <li>• 보증사채, 국·공채, 은행지급보증서</li> <li>• 종합금융회사 및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어음</li> <li>• 공사대확정채권</li> </ul>
어 음 할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진성어음</li> </ul>



**5. 융자한도**

**가. 기본한도**

2004년도 융자종류별 좌당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입보거래	신용거래
신용운영자금	742,000	667,000
담보운영자금	1,589,000	1,300,000
어음할인시공자금	1,459,000	1,100,000

※융자한도 적용기간 : 2003. 4. 1 ~ 2005. 3.31

**나. 특별융자한도**

조합원별 융자한도에 의한 융자 이외에 상당액의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기본한도액의 30%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 입보면제융자한도**

자기출자지분액의 90% 이내에서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6. 융자의 제한**

**가. 융자대상의 제한**

- (1) 조합원이 건설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경우 동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예치(출자)금에 대하여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는 신용운영자금 융자를 제한한다.
- (2) 신규조합원이 조합에 예치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해당 좌수 이외에 보증한도 부족 등의 사유로 증자한 좌수에 대하여는 융자가 가능하다.

**나. 융자의 제한**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합니다.

- (1) 출자증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되었을 때
- (2) 은행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3)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양도와 관련하여 조합이 의견서를 발급한 때
- (5) 어음할인 후 어음발행인이 지불정지 또는 부도처분을 받거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
- (6) 조합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이 금융기관의 신용조회 결과 N1·N2·N3 및 금융부실거래처로 분류된 때.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된 때 또는 N1·N2인 경우 이미 받은 융자금의 상환기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양도승낙조건의 담보공사가 채권보전상 불리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신용·채무상태등의 평가가 불량할 경우에는 융자종류별 융자한도 이내에서 조합원별 융자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 (8) 각종 보증금 청구, 융자금 연체 등 부실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여 조합계좌에 매월 자동이체하는 방법이 있다.

**나. 이자의 계산방법**

- (1) 융자이자는 융자원금에 당해 이율과 융자일 다음날부터 회수일(이자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2) 어음할인료는 어음할인금액에 당해 요율과 할인일 다음날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3) 융자당일에 회수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1일분 이자를 징수한다.
- (4) 융자이자 납부기일이 휴일이어서 그 다음영업일에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휴일까지에 해당하는 납부기간별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 (5) 할인어음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할인료를 징수하며, 융자금의 상환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의 이자를 징수한다.
- (6) 신용거래를 하는 조합원이 배우자 등 개인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출된 융자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2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융자이율 및 어음할인요율〉

○ 융자이율

기 간 별	이 율	비 고
31일이내(기준금리)	연 2%	- 1년은 365일을 기준함
31일 초과 92일이내	연 2.5%	
92일초과 184일이내	연 3.5%	
184일초과	연 5%	- 이자는 후취함
연체이율	연 13%	

**7. 융자이자 납부방법 및 이율**

**가. 납부방법**

- (1) 융자이자 납부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후취하고, 어음할인료는 선취한다.
- (2) 융자이자 납부는 조합에 직접 납부 또는 조합이 지정한 온라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인출일을 지정하

○ 어음할인요율

기간별	이율	비고
어음할인	연 2%	- 1년은 365일을 기준함 - 어음할인료는 선취함

○ 가산요율

신용거래를 하는 조합원이 보증업무규칙에서 정하는 개인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출된 용자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2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용자금이자 자동이체제도**

조합원이 조합을 직접 방문 또는 은행계좌입금을 통하여 용자금이자를 납부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 용자금이자 자동이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1) 거래가능 은행 : 모든 은행(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축협·수협·농협 단위조합 포함), 우체국은 거래가능시 별도 안내 예정임.
- (2) 출금가능 예금종류(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3) 출금이체 용자대상 : 운영자금(신용, 담보)의 용자금이자(연체이자 포함)
- (4) 출금일 : 매월 15일 또는 25일중 택일
- (5) 신청기일 : 용자금이자 출금일 1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6) 이용신청(거래지점에 서류 제출)
  - ① CMS 출금이체신청서(주거래은행 제출용)
  - ② CMS 출금이체신청서(조합 거래지점 제출용)
  - ③ 용자금이자 출금되는 통장 사본
  - ④ 법인사업체인 경우에는 법인명의,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통장이어야 하며, 신청서에 날인하는 인장은 예금통장에 날인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 (7) 용자금이자 자동이체제도 이용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① 신청 후 15일전에 도래하는 용자금이자 자동이체에 의하여 출금되지 않습니다. 첫회에 출금되는 이자는 납부기간에 따라 추가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첫회분 이자는 조합에 직접납부하면 추가이율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② 잔고 부족 등으로 미이체될 경우에는 예금잔고가 있는 다음달의 이체일에 납부기간별 추가이율에 의한 이자가 출금된다.
  - ③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 수표는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된다.
  - ④ 통장 또는 계좌번호변경시에는 주거래은행 및 조합 해당 지점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 ⑤ 연말에 일괄 송부하는 용자금이자 자동이체내역은 조합원 결산에 필요한 이자납부 영수증으로 사용한다.
  - ⑥ 용자금이자 자동이체제도 이용 신청시 뒷면의 "신청서 견본"을 참고.

본

CMS 출금이체신청서(수납점용)

신규  해지

은행(회)                      지점(앞)

수납기관명		대한성비건성공제조항					요금종류		용자이자				
납부자주소 및 성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신청일자			신청구분	납부자번호 [전화번호, 수용가번호, 증권번호, 카드(회원) 번호등] * 반드시 조량원번호 5자리까지 기재 하여야 합니다. (예 : 조량원번호 10인 경우)									
년	월	일		0	0	0	1	0	공란	공란	공란	공란	공란
은행코드				지정출금계좌번호						예금주성명(한글)			
수 납 기 관 코 드													
9	9	9	1	9	1	0	3	8	6				

뒷면 약관에 따라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감 또는 서명 대조

◀ 신청자 유의사항 ▶

- ▷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지신청을 하고 신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굵은선란은 컴퓨터입력자료이므로 선명하고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제원





## 출금이체 약관

1. 앞면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귀조합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출금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용자약정이 있는 경우 용자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수납기관이 의뢰한 대로 출금하지 않거나 잔액전부를 출금키로 하며,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종류의 출금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6. 출금이체 신청은 해당 납기일 15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됩니다.
9. 출금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금납부와 관련된 지정계좌정보(거래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등)가 수납기관에 제공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10. 연체이자에 대하여도 출금이체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 용자금이자자의 출금은 1개월 단위로 하겠으며 예금잔고 부족등으로 해당월의 이자가 출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잔고가 있는 이체일에 추가이율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겠습니다.
12. 건설업면허 취소등 조합탈퇴사유 및 업무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용자금이 있을 때에는 자동출금됩니다.

## 8. 용자금의 상환기간

용자종류별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다.

- 가. 운영자금 : 용자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1회(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나. 어음할인 : 할인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시공사자금 : 용자대상공사 준공기일 이후 2월 이내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기한이익의 상실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환기한 전이라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 가. 약정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나. 조합의 채권이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다. 용자금을 당초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
- 라. 조합원(차주) 또는 보증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명 또는 권리행사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마. 조합이 보증한 당해공사에 대한 발주자와의 등급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때
- 바. 조합원(차주)·연대보증인 또는 어음발행인이 지불정지 또는 부도처분을 받았거나, 파산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등 법률상의 수속을 받았을 때
- 사. 신용평가등급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예치기준에 미달한 때

## 10. 채무불이행시 조치

- 가. 조합원(차주)이 용자금의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연체일수 14일까지는 신규용자를 제한하고, 그 익일부터는 용자업무거래를 중지한다.
- 나. 할인한 어음이 기한이익 상실되거나 만기일에 부도된 경우에는 즉시 당해 조합원(차주)에게 상환하도록 조치하고, 기한이익상실일 또는 연체일로부터 업무거래를 중지하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업무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 다. 조합원(차주)이 연체일로부터 1월이내에 용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업무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 라. 연체된 용자금에 대하여는 조합의 소정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